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우경란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 제출 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2조에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관련 포상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에서도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시상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추후 집행 기관에서는 집행 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5
------------------	-----

발의연월일: 2025. 11. 6.
발 의 자: 우경란 · 임현호 · 이규선
최봉희 · 차인영 · 최인순
이성수 · 정선희 의원 (8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 제출 주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1조의2)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1조의2(포상) 구청장은 주민참</u></p> <p><u>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u></p> <p><u>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u></p> <p><u>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u></p> <p><u>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